

주택건설공사 감리재(전기) 모집 공고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선정을 위해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동법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 12. 18.)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15일
용인시장

1. 공고기간 : 2026. 07. 15.(수) ~ 2026. 07. 22.(수) (법정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내역	
가. 사업명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디케이이엔씨 대표이사 고 동 현 (02-2007-24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4층
다. 설계자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최홍남, 오성제, 김재석 (02-2047-30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52,가든파이버웍스동 4층
라. 시공자	㈜동일토건 대표이사 고 동 현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106, 4층 402호
마. 사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30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0,956.0㎡ ○ 연 면 적 : 94,800.8931㎡ ○ 규 모 : 아파트 6개동(지하2층/지상20층),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아파트 661세대 ○ 공사기간 : 2026. 10. 01. ~ 2029. 03. 31.(착공일로부터 30개월) ○ 전기공사기간 : 2027. 01. 01. ~ 2029. 03. 31.(착공일로부터 27개월) ○ 사업계획(최초)승인일 : 2025. 12. 30.
바. 사업비	○ 총사업비 : 321,582,674천원 ○ 대지비 : 88,127,220천원 ○ 총공사비 : 135,153,417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포함) ○ 전기공사비 : 8,732,891천원 (부가가치세 미포함, 일반관리비, 이윤, 발코니 확장 포함) ※ 전기공사비는 부가가치세 미포함(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3호) ※ 공사감리용역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4조제2호(실비정액자산방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함.

사. 입찰가격 산출
○ 감리대가 : 672,441,383원
※ 기초금액 : 652,268,141원
(감리대가의 97% 적용)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G2B)
▶ 감리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설정하고 각 구간내에서 무작위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업체)예비가격번호 2개 추첨(비공개)
▶복수예비가격 무작위 순으로 재배열하여 개찰집행 후 예정가격산출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참조
○ 예정가격 산출(전자입찰방식) :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 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평균금액
▶ 기초금액 상위개수: 7개 선정

3. 감리원 배치계획표

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 사 명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 예정일 : 2026년 10월 01일

공 사 기 간 : 2026.10.01 ~ 2029.03.31 (30개월)

구분	26년			27년												28년			29년			비고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건축공정																						2026.10 ~ 2029.03 (30개월)
전기공사																						2027.01 ~ 2029.03 (27개월)

※ 상기 배치계획은 실착공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6. 07. 23.(목) 10:00 ~ 2026. 07. 27.(월) 11: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 (1) 전자입찰서 제출시 8.가항의 서류(신청서 접수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감리자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예정자의 사실확인서류와 신청서류 대조시 기록누락 및 미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은 불가하오니 불이익(평가제외 등)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신청서 제출서류(8.가항의 서류)를 미첨부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실격처리) 됩니다.
- (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5)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제출 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7)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8)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9) 나라장터 시스템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 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신규등록업체 입찰참가자격 등록방법은 별첨한 안내문 <참고자료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6. 07. 27.(월) 14:00 이후(입찰집행관 PC)

-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을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세대별)에 종합평점 8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함.
- ※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를 별첨<참고자료>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3) 개찰결과 우선순위(1~5순위)업체에 대하여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사실확인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사실확인 서류 제출기간(종합평점 예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가. 기 간 : 2026. 07. 28.(화) 09:00 ~ 2026. 07. 30.(목) 18:00 (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용인시청 공동주택과(별관 1층)

※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간 내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대리인 제출 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첨부)

※ 우선순위(1~5순위) 업체는 아래 내용이 포함된 서류 사본 1부를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별도 제출

-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2) 자기평가서[별지 제7호 서식](총괄표)
-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협회발행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7.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6. 07. 31.(금) ~ 2026. 08. 04.(화)

나. 열람방법 : 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의 용인시(공동주택과)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내용

-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 감리자 및 참여감리원 현황
- 2) 자기평가표[별지 제7호 서식]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총괄표를 말함
- 3)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의 경력
- ※ 상기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하며, 열람 시 공문(위임장 첨부) 제출하고 위임 받은 자만 열람 가능함(서류 사진 촬영 불가)
- ※ 우편, 팩스, 전화로는 일체 접수하지 않으며, 이의신청과 관련한 상담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라. 이의신청 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 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 이의신청 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할 것(미 명기 제출 시 대상 제외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우편·팩스·전화의 방법으로 접수받지 않음에 유의할 것)
- 4)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 5)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상기 기한 내에 감리자지정권자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는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8. 응모서류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 2025.12.18. 일부개정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 및 서식을 따르기로 하고 그 외 자료는 본 공고문 별첨 등을 따른다)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1) [별지 제6호의2 서식]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 (2) [별지 제7호 서식] 자기평가서 I.총괄표 (비고란에 평점산정근거 기재)
- (3) 감리원 배치계획표 : 본 공고상의 [별첨 3]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제출
- (4)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 결산년도(회계년도 기준) 1년간
-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년간(결산년도 구분)합산 평가
- (5) [별첨 4] 서약서 1부
- ※ 제출서류 중 1건 이상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실격 처리함.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우선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 ※ 별지 제6호의2 뒷면 평가 구비서류 일체를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61호)」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증빙서류 제출
- (1) [별지 제7호 서식] 자기평가서 (I.총괄표 +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 별첨1,2)
 - (2)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 (3) 재무상태 건실도 :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검토보고서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당업체에 한함)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등 증빙서류
 - (5) 작업계획 및 기법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배점 기준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맞추어 과업수행계획서 및 작업기법을 명시하여야 하며, 작업기법 작성 시 일반적인 착안사항과 당해 주택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기술하여야 함 (형식적인 작성의 경우 감점조치)
 - (6) 행정제재 여부 증명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1년간
 - (7) 교체빈도 : 최근 1년간 감리자가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에서의 교체율 및 교체건수
 - (8) 업무중절도 관련 배치확인 서류(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 :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7) [별지 제10호 서식]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공사중지 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9) 감리원 관련
 - 경력 및 실적 : 감리원 경력확인서, 감리원 보유확인서
 - 자격증명서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자격증 사본(감리원수첩, 국가기술자격증, 감리원경력확인서)

- 행정제재 : 최근 1년간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감리원 업무중점도·교체빈도·부실벌점 확인서)
- 교육실적 : 최근 3년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이수 확인서(감리원 경력확인서)

(10) 증빙자료 : 감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 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유리한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위하여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상설 및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착하고, 위임장은 후면에 철하여 제출하기 바람**

(11) 그 밖의 응모서류 : 감리업자선정 신청서([별지 제6호의2 서식]) 뒷면 사실확인 서류 일체를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9.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른 **제출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검토보고서,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건실도, 행정제재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각종 확인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서의 기준일자 는 모집공고일로 합니다.

다. 감리원의 경력 및 실적 평가 관련

- (1) 감리원 경력확인서상 **사업명 및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란의 **감리경력(상주 또는 비상주 및 부분상주)**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하여 평가가 불가한 경우 또는 평가 및 산정방법에 의한 비율 적용이 곤란한 경우 해당 사업의 경력 및 실적에 대하여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2) **경력 및 실적기간이 중복가능한 설계 및 비상주 감리경력에 대한 경력 및 실적 평가**
 - 설계경력 : 동일기간에 여러 건의 설계용역을 수행하였을 경우 1개소(최대80%)만 경력산정하며 평가서에 날짜를 구분 명기하여야 합니다.
 - 비상주감리 :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제25조제8항에 의하여 9개 이하의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있으나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부표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의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제1호에 의하여 비상주 감리원의 경력은 경력산정방법에 따라 산정 후 산정된 기간의 20%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중복기간에 최대 5개소의 경력 및 실적을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며 6개소 이상은 경력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라. 비상주감리원의 업무중점도 평가방법

- (1) 소방, 정보통신 등 타법에 따라 배치된 비상주감리원의 현장개소와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현장개소를 합산하여 평가.
 - ☞ 합산 개소가 5개소인 경우 4점, 9개소 이상인 경우 0점
- (2) PQ평가시 전기 상주감리원(책임,보조)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이나 타분야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적 처리
- (3) 타분야 상주감리원이 전기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실적처리
- (4) 1개의 현장에 1인이 혼합하여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된 경우 모두 합산
- (5) PQ입찰 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에 중복배치여부를 기재토록 하고 허위 기재시 탈락 처리함

- 마.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증빙서류는 기한내 1회에 한해 접수받으며, 미제출한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세부평가항목관련 구비서류 미비 시 해당 세부평가항목 점수에 대하여 “0”점으로 평가 합니다.
-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자기평가서에 의해 평가한 후 입찰가격을 평가하며 우선순위업체 선정 후 우선위 업체부터 세부평가를 실시하며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의거 계속 평가

10. 재무상태 평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 “기업경영 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함

가. 평균 유동비율 : 125.42%

나. 평균 자기자본 비율 : 42.39%

※ 재정상태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금액 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다.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11. 적격심사 및 감리업자 선정 절차등

가. 평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경부고시 제2025-61(2025.12.18.)호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동기준 제3조 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별표3)에 의하여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나.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에 따름

다. 감리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

감리자모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신청서포함) ⇒ 개찰 ⇒ 우선순위(예비1 ~ 5순위)선정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자선정 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12. 감리업자(원)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적용시점

가. 감리업자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종합감리업만이 수행가능(영 별표 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나. 감리원

(1)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2조제2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적합한 자

(2) 응모자격제한 시점 :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함.

※ 당해 참여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비상주감리원으로 응모는 가능)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단, 타현장 배치기간과 배치계획이 중복되지 않음을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또는 감리자 지정권자의 배치(계획)확인서 제출시 인정)

다. 심사기준 기간계산 적용시점 :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함.(모집공고일 포함)

라. 감리원 배치기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 2의2에 따라 법정 배정 배치하여야 함.

13. 기타사항

※ 감리자선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예정가격 추첨,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1)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2) 공고일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3)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4)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 참가를 방해 및 관계공무원의 공동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나.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하 또는 취소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음.

다.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고(1건이라도 미 제출시 실격), 사실확인서류를 바탕으로 세부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1)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2)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3)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4) 교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 감리관련 교육훈련이 아닌 경우

라. 감리업자선정 신청서의 신청서류 및 자기평가서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판명된 경우에는 감리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리자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로 감리자로 선정하며, 당사자에 대하여는 세부평가기준 제10조의3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여 부정행위로 통보된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그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1년간 감리업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없음.

마.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함

바. 감리업 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여백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함.

사.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감리비를 정산하여야 함.

아. 감리낙찰자는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회피하는 경우 감리지정을 취소하고 차 순위자를 감리자로 지정함.

자.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자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수행일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함.

차.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카.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5순위까지 우리시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 후 즉시 폐기처분합니다.

타.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 상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과업수행계획		구분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3	2.7	2.4	2.1	1.8	0
평가기준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쪽수 (표지 및 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작업기법		구분					미제출
		수	우	미	양	가	
점수		2	1.8	1.6	1.4	1.2	0
평가기준	내용	문제점 조치사항 대책방안	적합		부적합		-
		쪽수 (표지 및 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쪽수 (표지 및 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3쪽 내외		2쪽 미만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 : 표지 및 간지 제외)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감리자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우리 시 홈페이지 및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입찰정보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동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파. 본 용역 기간은 용인시청 등 인허가 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시 공동주택과(☎ 031-6193-28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야	접수번호
전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

(사업명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6년 월 일

(회사명 기재)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 개요					
사업명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공고번호	용인시 고시 제 2026-000호
사업주체	상 호	(주)디케이이엔씨	대표자	고 동 현	
사업계획 내용	위 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302번지 일원		대지면적	30,956㎡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지하2/지상20층,6동 ,661세대	94,800.8931 ㎡	2026.10.01.	2029.03.31.
설계업자	대 표 자	최홍남, 오성제, 김재석	상 호	에이앤유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주)	
	주 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 52(문정동, 가든파이버웍스 4층)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제판용종)]

(뒤쪽)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감리업자	①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재무상태 건 실 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기술개발 및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 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작업계획및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 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등급/ 책임감리원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경 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④업무중첩도·교체빈 도·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교체빈도·부실벌점확인서
	⑤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시 · 도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 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 감리원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 한,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태건 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충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 · 감점	1.5	가. 지 역		1.5			
	1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5	다. 부실벌점		-5			
합 계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이 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II.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우선순위 5개업체에 한함)

- 평점란은 자기평점을 기재하고 평가란은 공란(기재하지 말 것)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평점	평가																													
가. 참여감리원		50																																				
(1)책임 감리원	(가) 등급	[25]																																				
		(-)	○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나) 경력 및 실적	(25)	○ 배정기준																																			
			<table><tr><td>규모</td><td colspan="5">경력년수 및 점수</td></tr><tr><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 3년이상</td><td>3년미만</td></tr><tr><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8년이상</td><td>8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1,200세대이상</td><td>15년이상</td><td>15년미만 12년이상</td><td>12년미만 9년이상</td><td>9년미만 6년이상</td><td>6년미만</td></tr><tr><td>점수</td><td>25</td><td>22</td><td>19</td><td>16</td><td>13</td></tr></table>					규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수	25	22	19	16	13	
규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수	25	22	19	16	1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table><tr><td>규모</td><td>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td><td>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1,200세대이상</td></tr><tr><td>년수</td><td>2년</td><td>3년</td><td>4년</td></tr></table>					규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수	2년	3년	4년																										
규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수	2년	3년	4년																																			
산출근거		(1) 등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2)보조 감리원	(가) 등급	[14]																																				
		(-)	○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나) 경력 및 실적	(14)	○ 배정기준																																			
			<table><tr><td>규모</td><td colspan="4">경력년수 및 점수</td></tr><tr><td rowspan="2">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td><td>3년이상</td><td colspan="2">3년미만 2년이상</td><td>2년미만</td></tr><tr><td>14</td><td colspan="2">12</td><td>10</td></tr><tr><td>1,200세대이상</td><td>6년이상</td><td>6년미만 5년이상</td><td>5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점수</td><td>14</td><td>12</td><td>10</td><td>8</td></tr></table>					규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수	14	12	10	8							
규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수	14	12	10	8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출근거		(1) 등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1																																
(3)비상주 감리원	(가) 등급	[11] (2)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원 미만 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 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 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 배정기준 <table><tr><td>경 력</td><td>10년이상</td><td>10년미만 7년이상</td><td>7년미만 4년이상</td><td>4년미만</td></tr><tr><td>점 수</td><td>9</td><td>7</td><td>5</td><td>3</td></tr></table>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나) 경력 및 실적	(9)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년) ※ 산출근거자료-별첨1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 실 적	-	(10)	○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 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 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 (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배정기준 <table><tr><td>구 모</td><td colspan="5">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td></tr><tr><td>1,200세대이상</td><td>80이상</td><td>80미만 64이상</td><td>64미만 48이상</td><td>48미만 32이상</td><td>32미만</td></tr><tr><td>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td><td>36이상</td><td>36미만 30이상</td><td>30미만 24이상</td><td>24미만 18이상</td><td>18미만</td></tr><tr><td>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td><td>12이상</td><td>12미만 9이상</td><td>9미만 6이상</td><td>6미만 4이상</td><td>4미만</td></tr><tr><td>점 수</td><td>10</td><td>9</td><td>8</td><td>7</td><td>6</td></tr></table>	구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구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산출근거		○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2																																	
다. 신용도		[10]																																	
(1)영업 정지	(가) 감리 업체	[7] (4)	○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를 받은 기 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 우 1월로 계산) ○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나) 참여 감리원	(3)																																	
	산출근거			(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2)재정 상태 건설도	(가) 자본 비율	[3]	(1.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 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배점기준		
	(나) 유동 비율		(2.0)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 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점 수	1.0	0.85
(라).기술개발및 투자실적 등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점 수	2.0	1.7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점 수	2.0	1.7
(1)개발 실적	-	(4)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2점(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1점(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특 허	100%	80%
				실용신안	100%	80%
(2)기술 개발 투자 실적	-	(4)	○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점 수	4	3.5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3)교육 실적	-	(2)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점 수	4	3.5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가. 개발실적 :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다. 교육실적	- 2주이상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2점= 점 - 1주이상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 1점= 점	
				(마). 업무중첩도	[10]	
(1)상주 감리원	-	(6)	○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구역 배치 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2)비상주 감리원	-	(4)	○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점 수	4	3
				구 분	6개소	7개소
				점 수	2	1
				구 분	7개소	8개소
				점 수	0	0
				※ 업무중첩도는 사·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바). 교체빈도	[5]	
(1)감리 업체	-	(2.5)	○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점 수	2.5	2
				교체빈도 (%)	10%미만	10%미만 20%이상
				점 수	2.5	2

(2)참여 감리원	-	(2.5)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		가. 감리업체 : 나. 참여감리원 :																
(사).작업계획 및 기법		[5]																	
(1)과업 수행계획	-	(3)	○ 공사시행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3</td> <td>2.7</td> <td>2.4</td> <td>2.1</td> <td>1.8</td> <td>0</td> </tr> </table>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2)작업 기법	-	(2)	○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table border="1"> <tr> <td>구 분</td> <td>수</td> <td>우</td> <td>미</td> <td>양</td> <td>가</td> <td>미제출</td> </tr> <tr> <td>점 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d>0</td> </tr> </table>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구 분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 업 기 법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방법		
가.가점	(1) 지역	(1.5)	○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2)책임 감리원	(1)	○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 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		(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나. 감점	부실벌점	(-5)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 부실벌점 :	

※ 비고: 위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평가방법은 [부표 3-1]과 같으며, 적격심사기준은 [부표 3-2]와 같다.

[부표 3-1]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 산정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경력년수를 10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발주자(이하 이 부표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 소속 직
원으로서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
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
사감독만 인정

나. 경력년수를 8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2)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경력

(3) 발주자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
한 공사감독 경력. 다만, 2008년 7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공사감독 경력은
법 제14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의 소속 직원으로서의 공사감독만 인정

다. 경력년수를 60% 인정하는 경력

(1)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설계·설계감리·시공 경력

라. 경력년수를 40% 인정하는 경력

(1) 건축물시설(2)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경력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은 위 경력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의 20%로 한다.

※위 표의 시공경력은 전기공사 현장에서 현장대리인·현장소장·책임기술자 및 시공관리
책임자 등의 시공관리 경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밖에 시공관련
경력 인정범위는 시·도지사가 공사감리용역의 특성에 맞게 보완·적용할 수 있다.

※참여감리원의 담당업무에 대한 경력은 감리원경력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인정하되 참여
사업명, 참여분야 또는 담당업무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복수 기재 및 불분명한 경우와 공
사 또는 용역이 중단된 기간 그리고 “전기(10)” 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의 직무분야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건축물시설 [2]			
20	공공건물	25	의료시설
21	주거시설	26	종교시설
22	업무시설	27	체육시설
23	판매시설	28	교육·연구시설
24	숙박시설	29	기타건축시설

2. 유사용역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위 표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나.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예시>

○ 준공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4년('01.10.1~'05.9.30) 및 감리수행기간 4년('01.10.1~'05.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준공실적 : (365일 ÷ 1,460일) × 100,000(㎡) = 25,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4.10.1~'05.9.30) = 365일(1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1.10.1~'05.9.30) = 1,460일/4년

○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이행비율×환산율)÷전체 공사기간} × 연면적(㎡)

(소수점이하 절사, 1년은 365일,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주거시설(21)의 연면적이 100,000(㎡)이고(단독수행) 전체 전기공사기간 5년('05.10.1~'10.9.30) 및 감리수행기간 5년('05.10.1~'10.9.30)인 경우, 모집공고일이 '07.9.30이면,

* 수행실적 : (730일 ÷ 1,825일) × 100,000(㎡) = 40,000(㎡)

- 최근 3년간 감리수행기간 : ('05.10.1~'07.9.30) = 730일(2년)

- 이행비율(지분율)은 없음, 환산율은 100%

- 전체공사기간 : ('05.10.1~'10.9.30) = 1,825일(5년)

※실적은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에 기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로 구분·기재된 실적과 전기(10)이외에 소방·정보통신 등 다른 직무분야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재정상태건실도의 평가는 연말 또는 반기 결산서에 의한다. 다만, 신규·합병·사업양수도한 사업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나. 합병·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1) 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또는 합병에 따른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2) 신고수리일 또는 등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재정상태는 협회가 발행한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또는 해당 감리업체가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확인한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검토보고서로 확인한다.

4. 기술개발,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교육실적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개발실적 평가

: 개발실적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력기술에 관한 전력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전력신기술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감리업체(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평가

(1) 당해 감리업체의 재무재표상에 전력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등에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최근 3개년도 전력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당해업체의 최근 3개년도 손익계산서상의 전기설계·설계감리·공사감리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만, 업체의 설립년수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된 해당 년수를 기준으로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 및 출원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도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전기부문의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적 평가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인정한다.

5. 시·도지사는 다른 공사현장에 낙찰자로 선정된 감리원의 현황사실을 협회에 의뢰하여 업무중첩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당해 용역과 중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의 공사 착공을 감안하여 별도의 중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교체빈도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감리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

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예시) 교체빈도 산정식

$$\text{○교체빈도} : \frac{\text{최근 1년간 교체건수}}{\text{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times 100$$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1) 최근 1년간 교체건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교체 : 상주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 비상주감리원의 교체 1건을 0.2건으로 산정하여 합산

(2) 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 : ① + ②

① 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1인으로 산정하되, 배치된 상주감리원수를 합산

② 비상주감리원의 배치 : 공사현장 1개소당 0.2인으로 산정하여 합산

나. 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공사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군 입대, 4주 이상의 입원 또는 치료, 퇴직, 이민, 사망, 발주자 교체 요청, 2개월 이상의 공사착공지연 또는 중지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7. 작업계획 및 기법은 당해 용역의 과업설명서 및 공사감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의하여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과 당해 공사감리용역 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제출된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8. 가정 및 감점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지역가점은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한다.

나.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다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에는 1점, 기능장인 경우에는 0.8점, 기사인 경우에는 0.7점, 산업기사인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가점한다.

다. 설계·공사감리 등의 부실벌점평가 및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5점의 범위에서 감점한다.

[부표 3-2]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적격심사기준(제10조의3제2항관련)

1. 총 괄

구 분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50점	70점
입찰가격	70점	50점	30점

2. 세대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

가.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30점	평가점수 $\text{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30\text{점}$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70점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text{평점} = 70 - 3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나.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50점	평가점수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5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50점	- 입찰가격은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50 - 3 \times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4점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100분의 93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계	100점	

다. 1,200세대 이상

심사항목	기 준	심 사 방 법
사업수행 능력평가	70점	평가점수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70\text{점}$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	30점	-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평점적용 ◦ 평점 = $30 - (88/100 - \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times 100$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계	100점	

[별지 제8호 서식]

감리비 입찰서				
입찰 내용	건 명 (공고번호)			
	금 액	금 원정(₩)		
입찰 자	회사명		감리업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전화번호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감리비입찰서를 제출하며, 감리업자로 선정된 경우 감리업자로서 성실히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입찰자 (인) 시·도지사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m ²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m ²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 업체에 한함)

구 분	경력사항		경 력 일 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비 상 주 감 리 원							
	[부 표 3-1] 제 1 호 가+나+다 목 <u>소계</u>					일 년	
	[부 표 3-1] 제 1 호 라 목 (안전관리경력) <u>소계</u>					일 년	
	합 계					일 년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 실적 (우선순위 5개 업체에 한함)

[illegible]

※ 수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

[별첨 3]

공 사 명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2BL 공동주택 신축공사

착공 예정일 : 2026년 10월 01일

공 사 기 간 : 2026.10.01 ~ 2029.03.31 (30개월)

구 분	26년			27년												28년												29년			비 고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건축공정																															2026.10 ~ 2029.03 (30개월)
전기공사																															2027.01 ~ 2029.03 (27개월)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 용 역 명 :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D1-2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 전기공사기간 : 2027. 01. 01. ~ 2029. 03. 31. (27개월간)

구분	성명	등급	투 입 일 자																																				개월	비고
			2027												2028												20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책임	○○○	기술사																																						
보조	○○○	-																																						
	○○○	-																																						
비상주	○○○	-																																						

※ 참여감리원의 명단(성명)을 기입하여야 함.

[별첨 4]

감리자 지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 공고번호 : 용인시 공고 제2026-000호
- ☐ 사 업 명 :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 “0”점등 감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은 배치기간 및 해당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 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용인시장 귀하

【참고자료 1】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
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 (‘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
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 ⇒ ‘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
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할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세대별 낙찰하한율 산출표

구 분	사업수행능력 배점	입찰가격			낙찰하한율
		배점	산식	85점이 되기위한 점수	
300세대 이상 800세대 미만	30	70	$7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55	<u>82.95%</u>
800세대 이상 1,200세대 미만	50	50	$50 - 3 \times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35	82.95%
1,200세대 이상	70	30	$30 - 0.88 - (\text{입찰가격} / \text{예정가격}) \times 100 $	15	72.95%